

## 장애아동청소년의 거주서비스 쟁점에 관한 혼합방법론 연구\*

김 미 옥

(전북대학교)

### [요 약]

이 연구는 Creswell과 Clark(2007)의 혼합방법론 중 내재적 모형(embedded design)을 활용하여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의 쟁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성인장애인을 중심으로 쟁점들이 도출되었고 주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거주시설의 장애아동청소년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국내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현재 거주시설 장애아동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 질적 분석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서의 지위 부재, 입소에 대한 완충장치의 미비, 별도의 시설과 관련한 의견의 혼재, 생애주기 관련 서비스 및 성인기 전환서비스 부족, 중증 장애아동청소년 서비스의 한계, 법적 지원체계의 미비, 인적자원의 보충과 질 관리가 필요함이 주요쟁점으로 제시되었다. 양적분석에서는 거주서비스의 목표와 기능, 연령 및 장애유형별 구분,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질적 연구의 결과에 내재시켜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의 쟁점 논의에 통합하였다. 이 연구는 거주시설 장애아동청소년이 당면한 실제적 쟁점을 혼합방법론을 활용하여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분석하고자 한 최초의 탐색적 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초 연구로서 관련 연구의 논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 거주시설, 혼합방법론

\* 이 논문은 2009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및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으로,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1. 서론

최근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실천, 자원의 발굴과 연계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강조, 공급자 위주의 복지가 아닌 수요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중심 복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김미옥, 2008). 이 외에도 활동보조지원제도의 도입('07년),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10년), 장애인판정체계의 정비('10년),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편('09년) 등 일련의 정부정책 추진 동향으로 장애인복지는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일련의 국내 장애인정책 동향을 살펴볼 때,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생애주기별로는 장애아동청소년<sup>1)</sup>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는 매우 복합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 정도, 장애유형, 생애주기 등 다양한 변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책동향은 성인기 및 장년기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이 대세여서, 상대적으로 장애아동청소년복지정책은 그 위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장애아동청소년복지는 아동복지나 장애인복지의 우선적인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명확한 정책적 관점 없이 보조적인 차원에서 일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외국과 달리 19세 미만 아동이 포함되었다. 외국은 아동청소년복지차원에서 19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포괄적 서비스가 전달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존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요양제도에서 제외될 경우,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부터 구조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김찬우·김미옥·임정기·신형익, 2008). 따라서 장기요양제도의 이데올로기와 장애아동청소년의 발달적 관점이 상충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장기요양제도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에서도 관찰된다. 장애아동청소년이 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들이 받는 서비스는 학습이나 통학 보조 등이 다수이며, 이용자 중 일부가 가족의 보호부담 감소 차원에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원래의 활동보조제도의 목적과 상충되는 것으로, 장애아동청소년에게 활동보조제도는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리적 제도로서 보조적 기능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을 살펴볼 때, 장애아동청소년은 주요정책에서 소외된 주변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변용찬 외, 2006), 이는 성인기 이후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거주시설의 장애아동청소년은 이중소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인장애인의 거주서비스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김용득·변경희·임성만, 2007; 김미옥·정진경·김희성, 2008).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은 연구의 주요대상이 아닌 경우가 다수여서, 그들이 성인장애인과 같은 혹은 다른 쟁점을 가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막연히 다를 것이라는 추측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는 국외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

1) 보건복지가족부(2009)에 의하면, 전체 등록 장애인수 2,104,889명 중 장애아동청소년 수는 87,537명이며, 이중 시설장애인은 4,954명인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20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청소년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나고 있다. 재가 장애아동청소년이나 그 가족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수의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으나, 거주시설과 관련된 연구, 그 중에서도 시설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Moore, Melchior, & Davis, 2008; Neieuwenhuijzen, Castro, Valk, Vermeer, & Matthys, 2006; Chou & Schalock, 2007; Morglin, 1988). 이 연구들은 장애아동청소년의 권리나 정책 동향 등을 제시할 뿐 장애아동청소년의 당면한 현실을 거주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주거 환경은 단순히 공간적 거주서비스의 기능 뿐 아니라 건강한 인성 발달 및 성인기 자립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보다 효과적인 거주서비스 체계 구축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장애아동청소년의 거주서비스 주요쟁점을 종사자의 인식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비록 탐색적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할지라도, 장애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거주서비스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는 국내 최초의 시도로서 그 함의가 크다.

## 2. 문헌고찰

오랫동안 재가 장애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은 장애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거주시설의 장애아동청소년은 연구, 실천 및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주변인으로 기능해왔다. 그 결과로 시설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인구나사회학적 통계가 존재할 뿐 이들이 당면한 삶의 실체나 거주서비스의 현실에 대해 연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성인장애인 및 일반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와 관련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최근 논의 중인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장애아동청소년이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아동청소년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지위특성들이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쟁점별 정리는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 논의에도 유용할 것이다.

첫째, 거주서비스의 개념 및 목표와 관련된 쟁점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함께 재활, 치료, 교육, 직업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인지 거주시설도 장애인복지관과 유사하게 교육과 치료 등 재활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시설 안에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는 듯 하나,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을 시설 내에 고립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 거주 목적 이외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거주시설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거주목적'과 '거주 및 요양목적'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개념을 정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용득·강희설, 2007). 즉, 거주시설은 거주시설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이용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치료 등의 서비스는 거주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장애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념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청소년기에 활발히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성인기의 사회통합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성인장애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에게 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나, 장애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 제기되지 않고 있다.

둘째, 거주시설의 기능 및 형태와 관련된 쟁점이다. 일반아동청소년의 시설보호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의미로 지원되고 있다. 동시에 일반아동청소년 시설보호의 기본 방향은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에 아동상담, 보호 및 치료,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가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의 다양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보호아동 보호·양육기능에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운영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내에서 소속사 제도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조기자립유도를 위한 시설아동 자립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아동·청소년사업안내, 2009). 반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 규모에 따라 대형과 소형으로 대체로 구분된다. 즉, 대규모 거주시설과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사이에 중간 단계의 시설이 부족하여 시설 규모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증상의 호전을 보이거나 기능이 향상되어 욕구가 변화하는 경우에 다양한 거주시설서비스 모델이 개발되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용득 외, 2007). 시설의 초기 입소 과정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는데 스스로 장기 입소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거주하도록 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연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거주시설은 일반아동청소년과 달리 매우 단선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거주서비스 과정과 관련된 쟁점이다.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거나 보호자의 의뢰가 있을 때는 아동의 입장에서 최상의 이익을 줄 수 있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상의 이익이 되는 보호조치란 가정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의 가정보호 형태를 의미하며 시설보호는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는 장애라는 특수욕구를 가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여 보호체계를 필요로 할 때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기준에 근거한 순차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배치는 일방적인 거주시설 배치, 개별서비스 계획의 부재, 입·퇴소 절차의 순차적인 과정 부재, 인원비례방식의 예산지원 방식을 통한 대규모화 유도 등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김용득 외, 2007). 이는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나,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들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장애아동청소년의 시설보호는 현실적으로 일반아동청소년과 달리 최후의 선택이기보다는 우선적인 보호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넷째, 거주서비스 내용과 관련된 쟁점이다. 아동청소년기를 고려할 때, 이들이 발달적 관점에서 건전한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는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건전한

발달이 성인기의 자립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아동청소년 경우, 성인기로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거주서비스 중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대규모 시설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시설 내 이용자가 성인이 다수이다 보니 장애아동청소년의 독특한 생애주기 욕구에 따른 서비스가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Trout, Casey, Chmelka, DeSalvo, Reid와 Epstein(2009)은 전환교육서비스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인기를 맞이한 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일반아동청소년과 같이 장애아동청소년 역시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특성이 고려되어 거주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쟁점이다. 즉, 특수욕구를 지닌 장애인이기 이전에 한 아동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당연한 현실을 살펴본다면, 장애아동청소년을 단순히 장애인복지의 영역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아동청소년복지와의 동시적 연계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특히, 거주시설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이슈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대규모 시설 운영으로 인한 높은 인권침해 가능성,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의 미비,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인력확보의 이슈 등이 아동권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외의 경우 소수의 연구에서 아동권리차원에서 거주시설 장애아동청소년을 연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예컨대, Trout 외(2009)는 거주시설의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비교하면서, 특수교육과 아동복지법이 동시에 검토되어, 거주시설 장애아동을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한 Tilli와 Spreat(2009)는 거주시설 지적장애아동이 응급상황에서 당면하는 위험의 심각성과 제한된 안전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거주서비스가 당면한 여러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상을 다각도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혼합방법론을 활용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1) 혼합방법론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은 하나의 연구에서 귀납법적 및 연역법적 접근을 동시에 사용하여 현상에 대한 다각도의 탐색을 시도함으로써, 하나의 연구방법보다 더 깊이 연구문제를 이해하고, 더 나은 추론 및 다양한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Tashakkori & Teddlie, 2002). 이를 위해 이 방법은 단일연구를 수행하면서 질적 및 양적연구에서 사용하는 관점, 방법, 전략, 개념 및 언어의 혼합 혹은 결합을 시도한다(Johnson & Onwuegbuzie, 2004:17; Creswell, 2003). 이 방법론은 양적 및 질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연구방법이긴 하지만, 그 둘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황윤세, 2009:284~289, 재인용).

〈표 1〉 혼합방법론의 특성

구분	양적 방법	질적 방법	혼합방법
지식	후기실증주의	구성주의/옹호적/참여적	실용주의
탐구 전략	실험설계 비실험설계(예. 서베이)	내러티브, 현상학, 민족지학, 근거이론 사례연구 등	순차적, 동시적, 변환적
연구 방법의 절차	미리 결정됨	만들어나감	미리 결정 혹은 만들어나감
	질문에 기초한 검사도구	개방형 문제	개방형 문제 폐쇄형 문제
	서베이, 관찰자료	인터뷰자료, 관찰, 문서, 시청각 자료	모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
	통계분석	텍스트 분석	통계분석과 텍스트 분석
연구자로서의 연구 수행	-이론과 설명의 검증 -연구변인확인 -연구문제와 가설에서의 변인관계 -타당도와 신뢰의 기준 -정보를 관찰하고 수치로 측정 -중립적 접근 -통계적 절차 이용	-연구참여자의 의미에 관한 수집 -단일개념과 현상에 초점 -연구에 개인적 가치반영 -연구참여자의 배경과 맥락연구 -결과의 정확도에 대한 타당성 -변화와 개혁에 대한 협의사항 창출 -연구참여자와 협력	-양적·질적 자료수집 -혼합의 이론적 근거 제공 -연구의 다른 단계에서 자료의 통합 -연구절차의 시각적 그림 제시 -양적 및 질적 연구 모두 수행

자료: Creswell(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p. 8-26.

혼합방법론은 양적방법론의 실증주의와 질적방법론의 해석주의의 오랜 패러다임 논쟁 속에서 실용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실용주의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태도로서 규정될 수 있으며(William James, 1962:183; 양성은, 2006, 재인용), 전통적인 이원론적 논쟁을 거부하고 질증주의와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패러다임이다. 즉, 실용주의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가 주요 관심사이며, 이론적 가치도 '얼마나 현실에 적용가능한가'라는 도구적 관점으로 판단한다(양성은, 2006: 1~3). 따라서, 혼합방법론은 특정방법론 혹은 방법의 기저에 있는 패러다임보다 연구문제를 어떻게 보다 잘 탐구할 수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이 있으며(Greene, 2007; Johnson & Onwuegbuzie, 2004), 양적 혹은 질적 방법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연구문제의 성격에 따라 더 정확한 자료수집과 분석의 유용성에 따라 혼합의 형태를 결정한다(Tashakkori & Teddlie, 2009).

혼합방법론은 단순히 질적 및 양적 연구결과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연구방법의 통합을 통하여 현상에 대한 심층적 통찰, 보다 폭넓은 관점의 수용, 연구의 유연성 및 타당성 향상 등을 추구한다(Green, 1994). 이에 대해 Green, Caracelli의 Graham(1989)은 혼합방법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삼각기법(triangulation)으로 혼합방법론은 동일한 현상을 상이한 연구방법을 통해 탐구한 후 그 결과들을 수렴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점검하여 상호확증을 얻고자 한다. 둘째, 상보성으로 질적 및 양적 연구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상호 비교하여 어느 한 방법에서 간과한 점을 보충하고

보강하고자 한다. 셋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상이한 연구방법으로부터 얻은 결과 속에서 역설과 상호대립을 찾아내서 연구문제를 새롭게 재구조화하고자 한다. 넷째, 발전적 측면으로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선행된 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가 후속연구방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상이한 연구방법을 통해 탐구하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폭을 넓히하고자 한다(양성은, 2006:3~4, 재인용).

혼합방법은 최근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가 시도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Creswell과 Clark(2007)<sup>2)</sup>이 제시한 네 분류방식 중 내재적 모형을 선택하였고, 이를 본 연구문제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우선, 질적자료분석 결과를 기초로 양적 서베이 질문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순히 질적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적 서베이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질적 분석결과와 문헌고찰을 통해 나타난 거주서비스와 관련된 쟁점들을 종합하여 양적 서베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적연구결과에 통합하여 논의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내재적 설계에서 각 자료들이 상호 다른 수준의 연구문제에 답하는데 사용되는 경향성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제한점<sup>3)</sup>이 있는 반면, 질적 자료를 통해 도출된 주요쟁점과 양적자료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내재시킴으로써, 하나의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점이 있다.

## 2) 자료구축의 대상

본 연구에서 질적자료의 구축은 초점집단인터뷰를 활용하였으며, 양적자료는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2) Creswell과 Clark(2007)은 학자들마다 다른 분류내용을 분석하여, 대표적인 4가지의 혼합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① 삼각접근 모형(triangulation design) ② 내재적 모형(embedded design) ③ 설명적 모형(explanatory design) ④ 탐색적 모형(exploratory design)이 그것이다. 삼각접근 모형은 가장 대표적인 혼합방법론의 설계방식으로 이 방법의 주목적은 같은 연구주체에 대해 상이하지만 보완적인 자료들을 얻는 것이다. 이 설계에서는 양적 및 질적 자료가 대등한 위상을 가지며, 둘 중 하나가 빠지면 연구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내재적 모형은 한쪽의 자료 유형이 다른 쪽의 자료유형에 내재(포섭)되어 있는 설계방식이다. 이 경우 내재하는 자료유형이 일차적 역할을 수행하고, 내재되어진 자료유형이 이차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내재적 설계의 내재되어진 특정 자료는 연구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는 것은 아니나, 이 자료가 없을 경우 다른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연구문제의 측면에서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갖기 때문에, 각 자료들은 상호 다른 수준의 연구문제에 답하는데 사용된다. 설명적 모형은 2단계로 이루어지며, 양적 분석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질적 분석이 추가되는 것이다. 즉, 양적 분석결과에 대해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그 이유 혹은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료수집과 분석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탐색적 설계 역시 2단계로 이루어지나, 일반적으로 질적 분석 후 양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수이다. 이 설계의 목적은 주로 새로운 지표, 개념, 분류의 개발, 혹은 새로운 현상의 탐구이다. 이 방법은 질적 방법을 통해 새로운 현상을 탐구한 후 탐구된 현상의 유효성을 양적으로 검증한다.

3) 일반적으로 혼합방법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과정 및 절차상의 어려움, 연구과정 중 질적방법과 양적 방법으로 적용하고 통합하는 시점의 어려움, 연구자가 질적 및 양적방법 모두에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양성은, 2006).

### (1) 질적자료의 참여자

이 연구는 거주시설의 장애아동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초점 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활용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는 토론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감정 및 신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통하여 특정 경험이나 주제에 대한 탐색을 보다 심층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어떤 주제에 대한 개인의 이야기 보다는 집단의 의견을 도출해 내는데 적합하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거의 부재하는 상황으로 국내 장애아동청소년의 현실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가 없고,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에 관한 쟁점을 도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연구방법이 더욱 유용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장애아동청소년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다. 인터뷰 질문은 크게 두 가지를 초점으로 하여, 비구조화된 형태로 집단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가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핵심 질문은 현재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가 당면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인터뷰는 2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시설장 집단, 두 번째는 중간관리자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전체적인 운영과 책임을 전담하는 시설장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중간관리자급 대상의 논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기관의 분포는 서울, 부산, 광주를 포함하여 전국의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거주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시설들을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 시설장 6명, 중간관리자급 6명 총 12명이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기관의 유형은 총 12개 기관 중 장애아동청소년 시설 3개, 장애영유아 시설 1개, 장애아동청소년 체험홈 1개, 성인혼합 그룹홈 1개, 성인과 함께 거주하는 시설이 6개였다. 이 중 장애영유아 시설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 특성과 관련하여, 그 차별성을 보하고자 유의적으로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sup>4)</sup>. 시설의 이용인수는 37명에서 122명까지 분포하였고 그룹홈(체험홈)은 4~5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 (2) 양적자료의 대상

조사대상은 00협회의 회원기관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하였다. 설문지는 00협회의 거주시설 회원기관 327개 중 102개 기관에 각 6부씩 총 612부를 우편으로 배부하였다. 설문 대상은 소재 지역과 장애아동청소년 보호여부를 고려하여 유의표집 하였다. 즉 서울, 경기, 충청·강원, 영남, 호남 등 5개 지역의 시설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전문가의 협조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을 많이 돌보고 있는 시설들이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는 각 시설별로 장애인거주시설의 현실과 쟁점을 이해하고 있는 선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시설 당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를 비롯한 선임 사회복지사, 선임 생활재활교사 등 6명의 종사자가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 회수 결과 55개 기관에서 275명의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이 중

4) 인터뷰 진행과정에서 영유아와 아동청소년간의 주요 쟁점에 큰 차이가 있어, 본 연구의 논의에서 제외하였고, 추후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74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으며, 여성 종사자가 남성보다 많았으며, 사회복지사 1,2급 소지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시설 내 지위는 생활재활교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교사, 사무국장 순이었다. 시설유형으로는 지적/자폐성장애인 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은 비교적 고르게 표집하였고, 연령별 분포현황은 만6세부터 18세 미만 거주자가 최대 73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71	26.8	시설유형	지체/뇌병변장애인 시설	8	14.5
	녀	194	73.2		지적/자폐성장애인 시설	21	38.2
최종학력	고졸	21	7.9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4	7.3
	전문대졸	89	33.3		시각장애인시설	6	10.9
	대졸	108	40.4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6	29.1
	대학원 재학	9	3.4		지역	서울경기도	16
대학원졸업이상	40	15.0	강원도	4		7.3	
자격증	사회복지사1급	91	34.5	경상도		10	18.2
	사회복지사2급	141	53.4	전라도		10	18.2
	없음	16	6.1	충청도		11	19.0
	기타	16	6.1	제주도		4	7.3
지위	생활재활교사	135	50.6	구분	최소	최대	
	사회재활교사	47	17.6	입소 현원	12	205	
	사무국장	34	12.7	만 6세 미만	0	36	
	시설장	18	6.7	만 6세~18세 미만	0	73	
	기타	33	12.4	만 18세 이상	0	141	
				기관별 아동·청소년 입소자 비율*	4%	100%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 질적자료의 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09년 9월에서 11월까지 세 달 동안 진행되었다. 초점집단의 구성을 위해 00협회, 장애인전공교수 2인, 장애인전공박사 3인, 그리고 거주시설 종사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자를 추천받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초점집단 그룹은 6~10명으로 운영되는데 연구참여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는 5~6명의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 그룹 당 5~6명씩 총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 1회씩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진이 직접 비구조화된 개방 질문을 통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의 질문은 공식적이고 순서적이라기 보다는 면접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보다 상세하게 질문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의해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이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인터뷰 전반을 이끌고자 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참여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인터뷰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곳으로 편안한 환경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여 학교 세미나 실이나 회의장 등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연구에서 보다 대상자에 대한 섬세한 윤리적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유태균, 2001). 따라서 연구자들은 초점 집단 진행 시, 연구 참여자들과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자에 대한 소개와 연락처,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자발성 및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 처리, 토론 내용의 녹음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또한 인터뷰 자료에 대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하였고,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인터뷰하거나 전화나 메일을 할 경우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자료분석은 인터뷰 자료의 녹취록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줄단위 분석을 통해 의미가 비슷한 문장들끼리 묶고 이를 주제별로 범주화시켜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상황별 이해의 촉진을 위해 인터뷰 내용을 가능한 인용에 충실히 보고하고자 하였다.<sup>5)</sup>

## (2) 양적자료의 수집 및 분석

양적자료의 수집은 문헌고찰 및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설문조사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와 초점집단 면접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사자 다수의 의견 분포가 어떠한지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주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서비스 대상이 성인장애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임을 고려하도록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설문지에는 각 주제에 대한 쟁점을 문장으로 만들어 제시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또는 시급성의 정도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00협회의 협조공문과 함께 협회의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우편발송되었고, 우편을 통해 회수되었다. 조사 기간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다. 양적자료의 각 쟁점 항목에 대한 종사자들의 의견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SPSS를 활용하여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5)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인용 보고서 (1) 등으로 표시하였다.

## 4. 연구결과 분석

### 1)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의 쟁점에 관한 질적 분석

#### (1) 아동청소년의 지위는 사라지고 장애인으로만 여겨짐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강도 높게 지적한 문제는 장애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으로서의 지위는 박탈당한 채 '장애인'의 입장으로만 고려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권리로서의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동청소년이면서 장애인이라는 특수욕구를 가진 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아동을 장애인으로 볼 것 인가 아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개념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장애인 시설에 있는 아동은 그냥 장애인이예요. 아동이 없어요 (시설장 1)

아동의 입장에서 먼저 접근을 하고 기본적으로 아동인데 중증장애요보호 아동이기 때문에 장애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보완되는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간관리자 2)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기는 성인과 달리 양육이나 성인의 보호, 치료나 교육의 관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거주시설의 상황은 성인시설에 일부 장애아동청소년이 섞여 있는 형태가 많아 아동청소년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제기하였다.

아동은 성인과는 다르죠. 아이들은 양육이지요. 18세 이전까지는 거의 학교교육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성인장애인처럼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학교지원하고 가정처럼 애들을 보호하고, 성인하고는 전혀 다르죠. (중간관리자 1)

서비스의 내용은 아동장애인에 대해서는 치료와 교육과 이게 중점이죠. 그리고 자립에 대한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의 일종이죠. 이제 뭐 성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중략) 아동으로서의 어떤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면서 시설에 한두 명 또 서너 명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분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설장 1)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아동청소년이 법체계 안에 명확히 명시되어 아동복지법 상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아동시설의 이용자들이 받고 있는 지원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체계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장애아동청소년들도 보호권 안에 들어와서 정확한 명칭으로

들어와서 7세 이후에 그냥 장애인으로 두는 게 아니라 아동의 권리, 청소년의 권리 이렇게 법체제로 들어와서 가려면 뭔가가 있어야한다는 것이죠. (중간관리자 1)

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아동으로써 아동에 대한 것들이 지원체계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뭔가가 명시가 되어서 명문화된 뭔가가 있어야지만 싸울 수 있어요. (시설장 1)

## (2) 거주시설 입소에 대한 완충장치가 없음

일반아동청소년들은 시설 입소단계가 아동사업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가정보호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반면 장애아동청소년들은 그러한 절차들이 미비하여 쉽게 시설에 입소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즉, 장애아동청소년은 일반아동청소년과 달리 거주시설에 입소할 때 아무런 제재나 완충 단계가 없이 시설에 입소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단순히 입소지원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 기본 비전의 부재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아동들은 보호시설로 가기 전에 중간단계를 거쳐요. 장애아동청소년들은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00명 성인 장애인중에 아동 2~3명이 있는 시설도 많아요. 왜냐면 아동은 시설입소를 하기 위해서 그 단계 거치는 조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장애아동청소년은요, 시설수급자면 동사무소 연결하면 시설의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중간관리자 1)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아동청소년의 거주지원정책에 반드시 예방에 관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즉, 시설입소보다는 가정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가족지원중심사례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강화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은 웬만하면 시설에 입소하지 않게 가족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해요. (시설장 6)

일반아동 경우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서 사실은 다양한 지원을 해주잖아요. 사실은 장애아동청소년이나 요보호 아동들에게 그런 제도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설로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일시적인 지원체제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런 것을 해야 하면 갈 곳이 없으니까 시설입소를 해요. (중간관리자 1)

## (3) 별도의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의견이 혼재됨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시설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혼재되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와 관련된 공개된 논의가 처음임을 얘기하면서, 각 기관이나 개인의 의견 개진임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첫째, 시설에서 성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는 성인 시설에서 소수의 아동청소년들이 섞여서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 다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들이 성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한 강점과 제한점을 각각 보고하였다. 장애아동청소년들이 성인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우선적인

제한점으로는 성인장애인들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인들만 돌보는 직원들이 아동청소년기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과 함께 살 경우 성적인 문제나 폭력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강점으로는 가족이 없는 시설 거주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인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아버지, 형, 누나 등 가족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점들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정서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뭘 또 배우는가 하면 나쁜 거를 많이 배우요. 어렸을 때 성문제가 있는 한 명이 미술치료를 받았거든요. 개가 어려서 큰 형들한테 너무 많이 당해서 지금도 안 고쳐질 정도로. (시설장 2)

동생이 그 형을 봤을 때 좋은 모델이 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무시하거나 형으로서 존중을 못해주면 형은 그거 확 화로 폭발해서 선생님이 없을 때 아이를 막 때리면서 (중간관리자 2)

어찌되었건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아동만 있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연령대가 다양해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는게 가족의 대체잖아요. 이제 가정 대체의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상하관계나 가족 같은 역할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형의 역할도 있고(중간관리자 4)

둘째, 일반아동청소년과의 통합거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아동청소년들의 거주서비스가 일반아동청소년들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이들과의 통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연구참여자들은 일반아동청소년과의 통합거주를 통해 현행법상 아동복지법의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성인이 이후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기부터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통합거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단순한 대상의 통합이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나 아동청소년기의 문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물리적 배치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제 그 아이들이 보면 지금 저희가 통합교육 가는 아이들하고 특수학교 가는 아이들하고 차이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능력은 참 비슷한데, 물론 상처도 많이 받고요, 좌절도 많이 하고, 하지만 취업지에 가면 그 아이들은 좌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나 이런 것들에 강해요. (중략) 자랄 때 행복한 게 좋은 건지 그 다음에 가서 그제 나온 건지, 저희도 답은 없어요.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열매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중간관리자 1)

일반아동하고 장애인 아동의 통합은 별로 안 좋아요. 가끔 일반아동시설에 있다가 저희 집으로 중간에 오거든요. 그 경우, 일반아동 시설에 있을 때 왕따를 당해 가지고 우리 집에서 큰 친구보다 훨씬 힘들어요. (중간관리자 5)

저는 부대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나가서 부대끼는 것은 점차적으로 향상이 된다고 보지만 가족 내에서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인지능력이 좀 좋고 더 떨어지는 차이점으로 인해 당사자가 소외감을 느껴요. (중략) 정서적으로 퇴행,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퇴행으로 돌아가 버려요.(중간관리자 6)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거주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거주시설의 형태로는 성인과 아동의 혼합형 및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전환, 연령별로 아동 청소년만 따로 거주하는 형태, 한 시설 내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이 따로 거주하는 형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증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일반아동청소년과의 혼합모형도 제안하였다.

보육시설 보면 만3세 이하, 4세, 5세 이런 식으로... 한 울타리 안이지만 집을 좀 떨어져서 짓던지 왜 그렇게 하면 같이 지나면서 한울타리지만 애기도 좀 보고 오빠도 보고 어르신들도 보고 그 사이즈를 주거환경 자체가 아동이 있는 곳과 성인이 있는 곳이 틀리잖아요. (중간관리자 3)

아동들은 소그룹 그룹홈이 좋아요, 소그룹 거주화 시설이 되면 다양하게 시스템을 도입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들이 되어 있으면 시설 진입을 좀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봤을때 시설에는 안 오는게 최고예요. (중간관리자 4)

아동, 청소년기, 성인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책을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죠. 아동과 청소년과 성인을 분류해서 하나의 집에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각각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입소는 가능한데 각각의 생활공간을 나누어서 특성에 맞게 나눈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보다는 그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중간관리자 6)

#### (4) 성인기 시설 전원은 장애 특성 및 선택권이 고려되어야 함

현재 거주시설들은 아동기 이후 성인이 되면 성인시설로 전원을 해야 하는 곳이 있고 거주하던 시설에서 전원을 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하여 18세 미만으로 구분한 후 서비스나 접근방법을 성인과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하지만 18세 이후의 시설전원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고하였다. 시설 분리를 주장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교사들과는 성인기 이후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전원을 반대하는 경우는 시설이 장애아동청소년의 집인데 18세가 되었다고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18세 이후 전원 할 만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시설 전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고, 지역별 전원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18세 이후가 되면, 보낼 데가 없어요. (중간관리자 4)

어찌보면 다른 일반인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하는데, 장애인은 살고 싶은 곳에 살 자유가 없는 거죠. 지방자치체가 되면서 어려워졌어요. 전원이... (시설장 6)

5-6세때 입소한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시설에서는 여전히 아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18세 이후에는 시설을 전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요. (중간관리자 3)

보냈던 집에 한 달 후에 왔는데 개가 식음을 전폐하고, 오래 있다가 정말 고향과 같은 자기 집인데 완전히 새로운 생소한 곳으로 보내지니까.. 저희가 목표를 바꿔가지고 성인으로 이렇게 나가고 아동이 이제 성인이 되면 성인홈으로 보내주고 삶을 같이 하자. 바뀌가고 있는 중이에요 (시설장 3)

연구참여자들은 거주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들의 권리 보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부모랑 같이 살 수도 있고 독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있고 싶어도 나가야만 할 수도 있잖아요. 선택은 할 수 있게 보장해 줘야지요. (중간관리자 4)  
 애들의 권리가 먼저지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죠. (중간관리자 5)

### (5) 아동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부족함

거주시설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첫째, 장애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 및 치료,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지원은 교육 및 치료적인 차원으로 이를 통해 장애아동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성인기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부족하여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치료바우처 사업의 경우도 재가 장애아동청소년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아동청소년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 이슈의 경우 예산 등과 관련되어 시설장들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의료적인 문제를 보조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고액입니까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어쨌든 성장기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해주면 좋아질 텐데 못해주고 있어요. (시설장 5)

아동에 대한 지원이 달라져야 해요. 아동은 성인기를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 봐야 만이 아이가 어떤 부분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니까. 이 지원체계는 없어요. (시설장 3)

장애 아동을 위해서 활동보조나 바우처가 다 열려있는데 이걸 다 재가 아동만 가능해요. 시설아동은 전혀 안돼요. (시설장 1)

둘째, 발달주기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함을 인식하여도,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아동청소년기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아동청소년기의 치료와 교육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경증의 경우는 학교지원이나 지역사회 통합이 중요하게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인장애인과 같은 인력배치는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 인력수급에 대한 편차가 있어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보충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이제 우리가 지금 직원을 지원 받을 때 중증 장애인은 4.7명당 2인이고, 아동 장애인은 8명당 2인이고, 경증 장애인은 10명당 2인이예요. 근데 우리가 시설 운영을 하다보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중증 장애인보다도 더 많은 지원이 가야 돼요. (중략) 이 장애인들이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 이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사춘기는 치르면서 오히려 더 심해요. (시설장 1)

3급 아동들이 더 많이 들어요. 학습지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아니면 꼼짝 못하잖아요. 일반아동 같은 경우 특기교육 같은 거 할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안나오잖아요.(중간관리자 1)  
경증일수록 경험이나 야외활동 등을 더 많이 하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이나 인력 등이 그에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중간관리자 4)

### (6) 중증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어렵고 부담스러움

연구참여자들은 중증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현실적으로 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고 부담스러움을 호소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중증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보호적인 부분이 부담스럽고 그들의 욕구과약이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경증을 시설에 입소시키려는 현실적인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실은 중증, 저희는 중증도 있어요. 그니까 경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한 외상장애 아동들도 있다 보니까 외상장애 아동들이 커가고 성장하면서 커가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케어적인 부분도 사실은 선생님들은 상당히 부담스럽죠.(중간관리자 4)

중증은 정말 욕구과약이 어려워요. 뭘 하고 싶은지 애가 머가 지금 가장 시급한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중간관리자 3)

### (7) 법적 지원체계가 부재함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이 논의되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시설'에 대한 법적체계나 지원체계가 전혀 없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법적으로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시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을 지원하면 모든 것이 불법이 되는 상황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에 거주시설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 지지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저희가 장애인복지법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원래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 시설은 0~7세 미만의 중증장애영유아시설하고 그 다음 바로 장애인 시설이에요. 그니까 장애인복지법 상에서는 요보호 중증 장애아동이 발생되었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법적체계나 지원체계가 없어요. (시설장 1)

사실 아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더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복지법 상에서는 아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동사업을 할 수 없어요. (중간관리자 1)

둘째,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만 해당되고, 아동복지법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자체가 장애인복지법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청소년들이 아동복지법의 서비스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소규모 거주서비스가 필요하여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시·군청과 마찰도 있고 시설운영비 지원에도 한계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



중 지원금과 수당 등(교통비, 교복비, 자립지원비, 문제집 지원비, 용돈 등)도 장애아동청소년들은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위탁제도 활용이 매우 유용한 현실적 대안의 일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책임 면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아이들은 교육비가 나와요, 버스비 같은, 장애아동청소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우리아이들은 버스비 안 나와요, 3급 아이들은 장애수당이 2만원 나와요. (중간관리자 1)

정부지원이 일반아동을 많이 받고 이런데 우리는 노력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국가가 보완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설장 2)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위탁이 시설에서는 불법이에요, 장애인시설에서 아동을 지원하면 모든 게 불법입니다. 그건 알고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가정제도는 위탁가정을 지원하는 협의체가 있어요, 그쪽에서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중간관리자 2)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아동청소년 서비스를 위해 위탁가정이나 성년후견제 등의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위탁가정의 경우는 어릴 적부터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장애아동청소년들을 자라게 하는 장점이 있고 지원금만 제공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성년후견제를 통해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하였다.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위탁이라는게 잘 키워져야 할 거 같아요, 아이가 최대한 어렸을 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어렸을 때 시설 입소보다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중간관리자 3)

이 시설에 사례관리체계 안에 성년후견인은 부모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이런 것이 같이 마련되는 것이 지금 이런 서비스를 더 일관되게 하고 또 생애주기별로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설장 6)

### (8) 인적자원의 보충과 질 관리가 필요함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치료나 교육,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동 등의 측면에서 성인에 비해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욱 많은 수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자의 경우도 질 관리를 위해 아동복지법의 인력지원체계와 같이 구체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필요한 인력이 딱히 몇 명이라는 것은 좀더 고민을 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아동 1명을 종일 쫓아다니다 그러구요, 그런걸 봐서는 선생님 한명이 3명이상 보기는 정말 힘들겠다 싶어요 (중간관리자 2)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복지를 지원하는 인력은 시군구에서 그 사람의 범죄조사도 하고 시군구에서 인력관리를 해요, 장애인복지법상 아동을 지원하는 사람은 안해요, 최소기준은 기관의 몫이에요,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다하게 되어 있어요, 아동복지법상에는 성문제 뿐만 아니라 금전문제까지 다 검증하게 되어 있어요. (중간관리자 1)

## 2)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의 쟁점에 관한 양적자료 분석

### (1) 거주서비스 목표와 기능에 대한 의견

장애인거주시설의 중요한 서비스 목적 중 하나는 사회통합과 사회복귀이다.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서비스 목적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거주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76.3%의 종사자들이 그렇다고 동의하였다. “장애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단계 거주시설이 많이 생겨야 한다”는 질문은 77%의 종사자가 동의하였다. “장애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통합경험을 위해 거주 이외의 활동은 시설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의 실제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임에도 64.6%가 동의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3〉 거주서비스의 목표와 기능에 대한 의견

(단위 : %)

문항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 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대체 로 그렇다	매우 그 렇다	평균*
①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시설은 20명 이내의 소규모로 해야 한다.	271	7.7	11.7	28.8	29.2	21.5	3.5
② 장애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통합경험을 위해 거주 이외의 치료, 교육, 종교, 여가 등 활동은 시설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70	1.1	5.1	27.7	36.9	27.7	3.9
③ 사회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아동·청소년과 일반아동·청소년이 함께 거주하는 시설도 만들어져야 한다.	271	6.2	24.5	34.7	21.2	12.4	3.1
④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거주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조정되어야 한다.	269	1.1	4.4	16.4	40.9	35.4	4.1
⑤ 장애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단계시설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	269	0	4.4	16.8	46.0	31.0	4.1

\* 각 문항을 5점 척도로 처리한 평균 값. 평균값이 클수록 동의정도가 높은 것임.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시설은 20명 이내의 소규모로 해야 한다”는 것과 “사회통합을 위해 일반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시설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의 정도가 높지 않았다. 현재의 입소정원과 입소현원이 평균 70명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20명 이내의 소규모 시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유추된다. 일반아동청소년과의 통합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평균 3.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체로 그렇다에 21.2%,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역시

24.5%, 중간이라고 의견을 유보한 경우가 34.7%로 나타나서, 종사자들간에도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질적 인터뷰에서 종사자들의 의견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거주서비스 역시 궁극적으로 사회복귀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시설서비스 안에서도 거주 이외의 치료, 교육, 여가활동은 시설 밖의 지역사회 접촉경험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공하되, 정책적으로는 다양한 중간단계 시설을 마련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 시설의 소규모화나 일반아동청소년과의 통합거주시설도 사회복귀와 사회통합을 위해 고려해야 할 대안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대규모화되어 있는 거주시설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일반아동청소년과의 통합 경험이 장애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거주시설의 연령과 장애유형별 구분에 대한 의견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을 6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장애영유아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연령에 따라서는 만6세를 기준으로 시설유형을 구분하고,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 시각장애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을 연령별 혹은 장애유형별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초점집단 면접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거주시설의 유형을 연령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는 입장과 연령별로 세분할 경우 잦은 전원조치로 인해 행정적 어려움 뿐 아니라 적응 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반론이 존재하였다. 이에 설문을 통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표 4> 연령별 거주시설 구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연령별 거주시설 유형구분에 대한 의견	빈도	백분율
① 연령별로 욕구가 다르므로 영유아시설, 학령기 장애아동·청소년시설, 성인시설로 더욱 세분해야 한다.	117	44.5
② 18세 미만(영유아+학령기) 장애아동·청소년시설과 18세 이상 성인시설로 구분해야 한다.	80	30.4
③ 현재대로 영유아시설과 나머지 전 연령으로 구분해야 한다.	20	7.6
④ 시설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잦은 전원으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해지므로 연령적 구분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38	14.4
⑤ 기타	8	3.0
합계	263	100

연령별로는 영유아, 학령기, 성인기로 더 세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44.5%로 가장 많고, 18세 미만과

이상으로 이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30.4%로 그 뒤를 이었다. 즉 현재와 같이 영유아만 구분하거나, 연령적 구분을 없애자는 의견보다는 영유아, 학령기, 성인기로 세분하거나 적어도 아동과 성인기를 구분하여 시설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이다. 이는 각 발달주기에 따라 서비스의 욕구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달주기별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주시설의 대상연령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연령 구분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14.4%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영유아시설과 나머지 전 연령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7.6%로 가장 낮다는 점이다. 연령적 구분을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은 하나의 시설 안에 전 연령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시설로의 전원에 따르는 행정적, 물리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자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시설 안에서 서로 다른 생애주기별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영유아기만을 따로 구분하는 현행 시설유형은 전원의 부담을 줄이지도 못하고 발달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유형 구분이 현행 체계와는 다르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종사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유형별 시설구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장애유형별로 시설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역시 장애유형을 구분하여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유형별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구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유형 구분에 대한 의견	빈도	백분율
①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장애유형별로 욕구가 상이하므로 시설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184	69.7
②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장애유형의 차이가 오히려 서로의 발달을 보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살도록 해야 한다.	73	27.7
③ 기타	7	2.7
합계	264	100

정리하면, 종사자들은 거주시설 유형 구분이 연령과 장애유형별로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세분화는 필연적으로 전원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시설 배치 및 서비스의 마련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3) 거주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의견

최근에 장애인 거주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예컨대, 장기적인 숙식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거주시설 뿐 아니라 좀 더 지역사회 친화적이고 사회복지의 목적을 강조하는 그룹홈,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단기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더 나아가 시설이 아닌 원가

족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가족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까지 그 논의는 매우 다양하다.

전체 장애인이 아니라 특별히 장애아동청소년의 수요를 고려할 때, 거주시설의 수요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각 거주유형별로 서로 다른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단순히 유형별 증감 자체가 아니라 장애아동청소년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유추하기 위함이었다.

〈표 6〉 장애아동청소년의 수요를 고려한 거주시설의 증감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거주시설 유형	사례수 (명)	줄여야 한다(%)	적절 하다(%)	늘려야 한다(%)
①. 대형거주시설(70명 이상)	263	82.1	12.9	4.9
② 중대형 거주시설(30-69명)	264	56.4	32.2	11.4
③ 중형거주시설 (10-29)	262	13.0	51.9	35.1
④ 소규모 그룹홈(9명 이하)	264	9.8	26.1	64.0
⑤. 단기 보호시설	250	8.0	28.8	63.2
⑥ 위탁가정(일반가정 유료 하숙)	248	6.0	33.5	60.5
⑦ 장애아동·청소년 원가족에 대한 임대주택(영구임대 아파트 등)	251	5.6	14.3	80.1

장기적인 숙식을 제공하며 전통적인 아동청소년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대형, 중대형, 중형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70명 이상의 대형거주시설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82%로 나타나서 종사자들은 장애아동청소년을 대형 거주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0~69명 정도의 중대형거주시설에 대해서도 56%가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하다. 10~29명의 중형 거주시설 역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3%로 낮은 수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거주시설의 경우, 적어도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규모를 작게 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지속적인 숙식을 제공하지만 지역사회 친화적인 특성을 가지는 소규모 그룹홈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64%로 과반을 넘어서고 있어서 전통적인 거주시설에 비해서는 선호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단기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은 원가정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보완하는 장애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장애아동청소년의 수요를 고려할 때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원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서비스에 대해서는 80%이상의 종사자가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특히 원가족의 보호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종사자들의 의견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장애아동청소년이 어떠한 형태의 시설이든 시설로 보내지기에 앞서 원가족이 최대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가족의 주거문제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질적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표 7〉 거주서비스 공급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 %)

문 항	사례수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그렇다
① 장애아동·청소년이 입소할 수 있는 거주시설 자리수가 부족하므로 시설을 더 지어서 장애아동·청소년의 입소자리를 늘려야 한다.	268	17.5	36.6	45.9
② 거주지역 내로 입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서 입소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이 어떤 지역이든 입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8	6.3	18.7	75.0
③ 장애아동·청소년 주거서비스의 공급량 확대를 위해 민간 비영리, 민간 영리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266	19.6	21.4	59.1
④ 장애아동·청소년 시설을 새로 짓기 보다는 기존 시설의 규모나 기능을 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267	10.9	23.6	65.5
⑤ 장애아동·청소년의 입소자리를 늘리기 위해 비장애 일반아동·청소년 양육시설에도 장애아동·청소년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7	44.2	27.0	28.9

원가족 보호를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원가족을 떠나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거주시설을 더 지어서 입소 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약 46%의 종사자가 동의한 것에 비해, 거주 지역 내 입소 제한 현실을 바꾸어 입소 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약 75%, 기존 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해 입소 자리를 늘리는 것에는 약 66%의 종사자가 동의하고 있다. 즉 시설 종사자들은 시설 입소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해서도 새롭게 시설을 더 짓는 것보다는 입소 시설을 아동청소년의 거주지로 제한하는 현실을 개선하거나 기존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일반아동청소년 시설에 장애아동청소년을 입소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정도가 낮아서, 이는 입소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영리, 비영리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반수를 넘는 59%의 종사자가 동의하고 있다. 이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의 개선이라는 최근의 복지서비스 경향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3) 질적·양적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 논의

본 연구는 하나의 자료(질적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이를 관찰하고 측정하면서 다른 자료(양적 자료)를 다른 방식의 관찰과 측정을 통해 구성하고 이를 중심자료에 내재시켜(embedded) 하나의 자료

를 다른 자료가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내재적 모형을 선택하여 본 연구주체에 맞게 일부 수정 후 활용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질적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양적자료를 내재시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거주서비스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질적분석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아동청소년으로서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하는 점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지위의 독특성으로 인해, 비록 거주서비스라 할지라도 성인과 달리 양육이나 치료, 교육 등이 그 개념 및 목표에서 논의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한편, 양적 분석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의 거주서비스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조정되어야 하는 점(평균 4.1), 지역사회 통합경험을 위해 거주 이외에 치료, 교육, 종교, 여가활동 등이 가능한 시설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평균 3.9) 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 내 혹은 외부에서 교육 및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견해 차이는 존재할지라도,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치료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성인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이 강조되는 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거주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적절한 교육 및 치료서비스의 제공 방안이 성인장애인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거주서비스의 형태 및 유형과 관련해서, 질적 분석결과에서는 성인과 함께 거주하는 이슈, 일반아동청소년과의 통합거주에 대한 이슈, 성인기 시설 전원 등과 관련하여 하나로 정리하기 어려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었다. 각각 장단점을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하여 현재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장애계 현장에서 매우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양적 분석에서는 연령별 유형구분에서 연령에 따라 시설이 구분(영유아시설, 학령기 시설, 성인기시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4.5%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유형별 구분 필요성은 69.7%로 조사되었다. 현재와 같이 영유아시설과 나머지 전 연령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지지하는 견해는 7.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의 영유아전후로 구분하는 이분화된 형태의 거주시설 구분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질적 결과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견해를 참고할 때, 연령이나 장애유형 구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거주시설, 예컨대, 중간시설, 연령별로 다양한 형태의 시설운동을 통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양적 분석결과를 보면, 장애아동청소년 원가족에 대한 임대주택(80.1%), 소규모 그룹홈(64.0%), 단기보호시설(63.2%), 위탁가정(60.5%) 등으로 제시한 시설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셋째, 거주서비스 내용 및 수요 관련하여 질적 분석에서는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 치료 및 의료서비스의 부족, 아동청소년기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의 부족, 중증 장애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지원의 한계 등 주로 서비스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제시되었다. 반면 양적 분석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수요를 고려할 때 거주서비스의 수요공급 증감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무엇보다 원가족 보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원가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이 80.1%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소규모 그룹홈의 확대 64.0%, 단기보호시설, 위탁가정 등의 지지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대형거주시설에 대한 수요는 4.9%에 불과하여, 소규모시설로의 전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법과 제도적 측면과 관련하여 질적 분석 결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시

설에 대한 법적 체계나 지원체계가 전혀 없는 점, 아동복지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 입소지원체계가 미비한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양적 분석에서는 거주지역내로 입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75.0%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시설을 새로 신설(45.9%)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의 규모나 기능의 전환(65.5%) 등이 강조되었다. 양적 연구에서는 기존 시설의 규모나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평균 3.5) 등이 제기되었다. 질적 분석에서는 법과 제도차원에서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다양한 세부 지원체계의 마련, 거주시설의 인력 보충을 통한 질 관리 등이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거주시설 종사자의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의 쟁점과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동안 국내 장애인복지의 현실은 상대적으로 성인장애인을 중심으로 쟁점들이 도출되었고 주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으로서나 장애인으로서 양자의 측면에서 모두 우선적인 관심 대상으로부터 배제되어왔다. 특히, 시설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재가 장애아동청소년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는 연구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재가 장애아동청소년이나 그 가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는 반면, 시설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탐색적 연구조차 시도되고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현재 거주시설 장애아동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종사자가 인식하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혼합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혼합방법론은 내재적 모형을 선택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이 당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종사자가 인식하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주요쟁점은 아동청소년으로서의 지위 부재, 입소에 대한 완충장치의 미비, 별도의 시설과 관련한 의견의 혼재, 생애주기 관련 서비스 및 성인기 전환서비스 부족, 중증 장애아동청소년 서비스의 한계, 법적 체원체계의 미비, 인적자원의 보충과 질 관리가 필요함 등이 논의되었다. 양적연구에서는 거주서비스의 목표와 기능, 연령별, 장애유형별 구분,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의견 등을 질문하였으며, 이를 질적 연구 결과에 내재시켜, 종합논의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여기서는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 체계구축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시설 장애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족지원정책의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장애아동청소년 정책이 갖는 고유성으로서, 그 어느 대상 영역보다도 가족정책 및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능한 가족 내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이 지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의 마련이 요청된다. 예컨대, 영국은 장애아동청소년 정책의 주요원칙으로 부모지원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에 우선을 두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 역시 장애아동서비스의 주요원칙으로 가족중심의 서비스, 가족복원력 강화,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sup>6)</sup>.

이러한 기본 전제 하에서 구체적으로 거주시설의 장애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들



의 아동청소년으로서의 지위 확보가 일차적으로 모든 정책의 체계 구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으로서의 지위를 기반으로 하여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 위에 장애라는 특수욕구를 지닌 대상으로서 추가서비스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의 발달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으로, 특히 장애아동청소년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의 제반 영역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통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가족 혹은 가정에 기반한 보호가 강조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가족 보호정책, 입양 혹은 가정위탁 강화, 시설입소시 가정과 같은 환경의 조성 등을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만 아닌 서비스 전달체계 및 대상자, 정보의 통합체계 구축 마련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개별지원계획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지속적인 발달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생애주기보다도 개별상황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증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각 개인이 처한 특수 장애욕구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구축이 이후 성인기의 자립과 깊은 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고려가 요청된다. 넷째, 성인 전환서비스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아동청소년의 매우 중요한 서비스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설장애인복지영역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영역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증 장애의 경우, 조기부터 퇴소를 고려한 지원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예컨대, 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홈을 확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자립홈에서 거주 훈련 후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방안, 혹은 퇴소 이전의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내외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퇴소준비위원회의 운영 등도 고려할 수 있겠다. 다섯째,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인력 확보 및 배치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아동청소년을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성범죄 등의 사전 검증과정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보장장과 관련하여 보호와 통제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 이슈는 어디까지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영역이고, 시설보호의 특성상 아동의 교육이나 양육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보호와 통제에 대한 윤리적 민감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매우 복잡한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들을 기관 내규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 연구는 종사자들의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장애아동청소년들이 당면한 거주서비스관련 쟁점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비록 이 연구가 탐색적 연구라는 제한점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최초로 이러한 연구주제를 실천현장의 이해에 바탕을 두고 아래로부터 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 점, 혼합방법론을

6) 영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서비스의 주요원칙은 다분야/다기관 간의 통합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 부모 지원을 통한 가족기능의 강화에 우선, 조기개입확대를 통한 서비스 효과 증대, 성인으로의 전환서비스 강화이다(<http://www.dh.gov.uk>). 반면 호주는 가족중심의 서비스, 가족의 복원력 강화,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공식/비공식 지역네트워크 확대,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존중을 서비스 원칙으로 제시하여 영국에 비하여 보다 가족중심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http://more.nsw.gov.au>).

적용하여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시설 장애아동청소년이 당면한 현실상황 분석의 깊이와 충분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 등은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연구가 본 연구주체의 거의 최초의 시도임을 고려하여 연구주체의 특성상 거주시설에 있는 아동청소년기의 이용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포괄적,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이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이 생애주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상으로 좁혀 연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성인기로의 준비기간으로서 아동청소년기와 관련된 다양한 후속연구들을 통하여 이들이 거주시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이 연구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 실천적 시도들이 촉발되어, 장애아동청소년 거주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김미옥·정진경·김희성. 2008.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연구 : 장애인당사자와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3(6): 389-422.
- 김미옥·정진경·김희성·조민선·배영미. 2009. “아동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교재 개발-아동복지시설 종사자용-”, 보건복지가족부.
- 김용득·강희설. 2007. “이용자 선택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서비스 체계 개편 방안” 『한국장애인복지학』 6: 55-83.
- 김용득·변경희·임성만. 2007. “장애인거주시설 기능과 구조의 혁신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 김찬우·김미옥·임정기·신형익. 2008.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변용찬·김성희·윤상용·권선진·조홍식·조성열·강종건·최승희. 2006.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복지 욕구 분석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양성은. 2006. “가족연구를 위한 혼합방법론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4(9): 1-8.
- 유태균 역. 2008.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Deborah, K. P.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서울: 나남출판.
- 황윤세. 2009. “유아교육연구에서의 혼합방법론 적용을 위한 예비적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3(5): 277-305.
- Chou Y. C and Schalock, 2007. Trends in Residential Policies and Servic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aiwa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vol 51: 135-141.
- Creswell, W. J., 1999. Mixed-method Research: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In G. J. Cizek(Ed.), *Handbook of Educational Policy*(pp. 455-47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reswell, J. W, 2003. *Research Design*(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Creswell, W. J. and Clark, V. P., 2007. *Mixed Methods Research*, CA: Sage Publication.
- Green, J. C., Caracelli, V.J., and Graham, W. F. 1989.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Mixed

- Method Evaluations. *Education and Policy Analysis*, 11: 255-274.
- Green, J. C. 1994. Qualitative Paradigm Evaluation. In N.K. Denzin. & Y. S.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pp. 530~544). Thousand Oaks, CA: Sage.
- Greene, J. C. 2007. Mixed Methods in Social Inquiry. San Francisco: Jossey-Bass.
- Johnson, R. B., and Onwuegbuzie, A. J., 2004. Mixed Methods Research: A Research Paradigm whose time has come. *Education Researcher*, 33(7): 14-26.
- Moore S. A, Melchior, and Davis J. M, 2008. 'Me and the 5 P's': Negotiating Rights-Based Critical Disabilities Studies and Social Inclu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 Rights* 16: 249-262.
- Morglin, K. N. 1988. Risk of a Privacy Policy by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Handicapped Adolescent. *Journal of Rehabilitation*, 50-54.
- Morgan D. L. 1998. *The Focus Group Guidebook: Focus Group Kit 1*. Leadership Potential: Lessons From.
- Neieuwenhuijzen, M, Castro, B.O, Valk, I, Vermeer, A, and Matthys, W. 2006. Do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odels explain aggressive behavior by children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residential care? *Journal of Intellectual Research*, vol 50: 801-812.
- Tilli D.M, and Spreat, S. 2009. Restraint Safety in a Residential Setting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ehavioral Interventions*, 24: 127-136.
- Tashakkori A. and Teddlie C., 1998. *Mixed Methodology*. Thousand Oaks, CA: Sage., 염시창 역 (2004), 『통합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Tashakkori A. and Teddlie C., 2002.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CA: Sage Publication.
- Tashakkori A. and Teddlie C., 2009. *Foundation of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Trout, A. L., Casey, K, Chmelka, M. B, DeSalvo, C, Reid, R, and Epstein, M, 2009. Overlook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Care, *Child Welfare*, Vol. 88(2): 111-136.
- 영국의 보건부 <http://www.dh.gov.uk>
- 호주의 NSW 주정부 <http://more.nsw.gov.au>.

## Mixed Methods Research on Issues of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Kim, Mi-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ssues of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using mixed methods research. In Korea, welfare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end to focus on adults with disabilities. As a result,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often receive less attention in welfare policies, which is especially true of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at residential facilities, who have confronted more serious situations than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living together with their families. Thus, the goal of this study explores the issues of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and suggests alternatives grounded i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used a mixed methodology; in particular the embedded design that is designed by Creswell and Clark(2007). In qualitative research, representative professionals who work at residential facilities were selected using the recommendations of professional groups, and were interview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 methods. In quantitative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houghts of professionals on the issues of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using questions that were developed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lored the issues of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field experienc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suggested political alternatives for the future.

Key words: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residential care services, mixed method research, embedded design, residential facilities

[논문 접수일 : 11. 03. 28, 심사일 : 11. 04. 19, 게재 확정일 : 11. 05. 13]